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조·가공하는 <u>공장으로</u> 법 제185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<u>업종</u></p> <p>제5조(특허요건) ① 보세공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, 공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등이 보세공장관리 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<u>비치</u></p> <p>3. ~ 7. (생략)</p>	<p>----- <u>공장의 경우</u> -----</p> <p>----- <u>업종</u> -----</p> <p><u>종</u> ('23.0. 개정)</p> <p>제5조(특허요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비치(세관장이 해당 보세공장의 제조공정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)</u> ('23.0. 개정)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물품검사 공정이 없거나 보세공장 외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특허요건 완화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6조(설치·운영의 특허) ① 보세공장 설치·운영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·운영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공장설치·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 민원인 제출서류 ('07.12., '22.11. 개정)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「<u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(최근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설치·운영의 특허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「<u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2조에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법령명 변경 반영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특허심사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</u>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'23.0. 신설)</p> <p>⑤ <u>위원은 특허신청인과 최근 3년 이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</u> ('23.0. 신설)</p> <p>⑥ <u>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 ('23.0. 신설)</p> <p>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</p>	<p>○ 외부위원 임기 규정</p> <p>○ 위원 회피사유 규정</p> <p>○ 위원 해촉사유 규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7조(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세관장은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<u>제5조1항에</u> 해당하는 보세공장(이하 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”라 한다) 또는 「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</p>	<p><u>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2. <u>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</p> <p>3. <u>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4. <u>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</p> <p>제7조(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----- ----- <u>제5조제1항에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오탈자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</u>에 관한 훈령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(이하 “<u>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</u>”라 한다)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추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191조에 따라 동일세관관할구역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. ('04.3. 삭제, '06.6. 신설, '12.6. 개정)</p> <p>1. <u>보관창고</u>: 해당 <u>보세공장의</u>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일 것</p>	<p><u>법규수행능력측정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<u>보세공장 및 동일법인 보세공장의</u> -----</p> <p>----- ('23.0. 개정)</p>	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 <p>○ 보관창고 활용도 제고</p>

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만,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·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13조(물품의 반출입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·가공·수리 또는 재생한</p>	<p><u>다. 다만,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·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신청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 임차기간 종료 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. ('23.0. 신설)</u></p> <p>제13조(물품의 반출입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임차시설을 일부 포함하여 특허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공장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</p> <p>○ 복합물류보세창고와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유무역지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12.6., '22.11. 개정)</p> <p>1. 비축·보관·판매를 위하여 다른 보세구역 또는 <u>동일법인의 보세공장으로</u> 반출하는 경우 ('06.6. 개정)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⑦ ~ ⑨ (생략)</p> <p>제16조(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「<u>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18조를 준용한다. ('11.3. 신설)</p> <p>제17조(물품의 장치 및 관리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해당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</u></p>	<p>-----, '23.0. 개정)</p> <p>1. ----- ----- <u>보세공장으로</u> ----- -----, '23.00. 개정)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17조(물품의 장치 및 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&lt;삭제&gt; ('23.0.)</p>	<p>○ 동일법인이 아닌 다른 보세공장으로도 반출 가능</p> 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 <p>○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장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번호 부여 후 다른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포함한다)과 <u>자유무역지역</u>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, 내국물품은 사용신고를 생략한다. ('04.3., '05.1., '06.6., '13.12. 개정)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 <p>제22조(장외작업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 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장외작업을 허가</p>	<p><u>식에 의해 반입되는 물품으로 다른</u></p> <p>-----</p> <p><u>자유무역지역 또는 복합물류보세창고</u>로부터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'13.12., '23.0. 개정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장외작업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(별지 제7호의3서식)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, 작업기간,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 ('20.7. 개정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장외작업장과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</u></p> <p>④ ~ ⑪ (생략)</p> <p>⑫ 운영인은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원재료 및 제품의 운송 시에는 보세 운송등록 차량, 원보세공장 또는 장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장외작업장,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</u> <u>간에 한 곳 이상의 장외작업장 등에서</u> ----- <u>경우</u> ('23.0. 개정)</p> <p>④ ~ ⑪ (현행과 같음)</p> <p>⑫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장외작업 포괄허가는 ① <u>여러 장외작업장간</u> 또는 ②<u>장외작업장과 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장간</u> 모두 가능함을 명확화</p> 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9조(건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선박이나 <u>철도차량</u>을 보세공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시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. ('06.6. 신설, '22.1 1. 개정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해양플랜트를 포함하며, 시운전은 해양플랜트의 진수작업을 포함한다. <u>이때</u> 해양플랜트의 진수작업을 위한 보세운송수단으로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.</p>	<p>제29조(건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철도차량, 항공기</u>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'22.1 1., '23.0. 개정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. <u>이때</u> ----- -----</p>	<p>○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항공기의 시운전 절차 마련</p> 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(‘22.11. 신설)</p> <p>제30조(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)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신 고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. (’06.6. 개정)</p> <p>1. 동일법인 보세공장(자유무역지역 <u>입주기업체</u>를 포함한다) 간 반출 입 물품 (’12.6. 개정)</p> <p>2.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(자유무역지역 <u>입주기업 체</u>를 포함한다) 간 반출입 물품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제30조(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<u>입주기업체 및 복합물류보세창고</u>- -----, ’23.0. 개정)</p> <p>2. ----- <u>입주기업 체 및 복합물류보세창고</u>----- ----- (’23.0. 개정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보세공장과 복합물류보세 창고 간 보세운송 특례 (자동수리) 절차 적용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③ 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보세운송 특례적용신청(승인)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 <u>보세공장</u> 및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승인하고 전산시스템에 <u>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</u>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. ('05.1., '06.6., '12.6. 일부개정)</p> <p>1. 제1항제1호의 물품</p> <p>가. <u>보세공장</u>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물품관리체계상 반출입 물품관리에 지장이 없는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<u>보세공장, 복합물류보세창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, '23.0. 개정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<u>보세공장, 복합물류보세창고</u> - ----- -----</p>	<p>○ 복합물류보세창고 관련 절차(세관장 협의, 보세구역부호 등록 등) 규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경우 ('12.6. 개정)</p> <p>나. ~ 다. (생략)</p> <p>2. 제1항제2호의 물품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최근 3개월의 해당 업체 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인 경우. 다만, 해당 보세공장(자유무역지역 <u>입주기업체</u> 포함)이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경우 반출입 횟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다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-----, '23.0. 개정)</p> <p>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입주기업체 또는 복합물류보세창고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('23.0. 개정)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⑤ ~ ⑩ (생략)</p> <p>제35조의3(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설치·운영특허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<u>지정신청서(별지 제1호의4서식)</u>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신청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「<u>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 자체 보세공</p>	<p>-----, '23.0. 개정)</p> <p>⑤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5조의3(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지정신청서(별지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「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4조제3항 및 제4항제2호를 ----</p>	<p>○ 오자 수정</p> <p>○ 관련고시 개정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장 특허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요건의 충족 여부 및 관세행정의 목적에 부합 하는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,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관장은 보세공장 설치·운영 특허장(별지 제2호서식)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(별지 제1호의5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제36조(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) ① ~ ④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&lt;신설&gt;</p> <p>제37조(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) ①</p>	<p>⑤ <u>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해당 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여야 하며, 관세법령이나 이 고시 규정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단순 보고 지연 등 세관장이 경미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특례 적용을 중단한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개선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에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. ('23.0. 신설)</u></p> <p>제37조(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) ①</p>	<p>○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사항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</p> <p>○ 운영인이 신청하는 특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제12조제3항 <u>각 호의</u> 물품 외에도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목적과 관련 있는 물품은 보세공장에 <u>반입</u>할 수 있다. ('22.11. 신설)</p> <p>8.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 물품이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</p>	<p>----- ----- -----<u>. 세관장은 각 호의 특례 사항 중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인이 신청하는 특례적용대상을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</u> ('23.0. 후단 신설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및 제14조의</u> ----- ----- <u>반입</u> <u>하거나 보세공장에서부터 반출할</u> -----, '23.0. 개정)</p> <p>8. ----- -----</p>	<p>적용 대상을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절차 규정</p> <p>○ 물품 반출입 대상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(원칙적 허용)으로 전환하여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 지원</p> <p>○ 장외장치장과 장외작업장에서 긴급히 수출되는 무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견품 및 광고용품에 해당되고, 물품 가격이 미화 1만불(FOB기준) 이하인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('22.11. 신설)</p> <p>9. ~ 10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<u>있으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<u>으며,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제17조의2에 따른 장외일시장치장과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신고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 ('22.11. 신설, '23.0. 후단 신설)</u></p> <p>9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제22조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장외작업 완료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은 별지 제7호의4서</u></p>	<p>상 견품에 대해서도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토록 하여 수출계약 성사 등 지원</p> <p>○ 허가신청, 정정, 완료보고 등 행정절차 생략으로 조선업 등 상시 외주작업을 하는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 지원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용신고, 물품 반출입 내용 등은 보세사가 자체 기록·유지하고, 기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39조(수출물품의 선(기)적 관리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운영인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되어 보세운송된 물품이 주문취소, 적재일정 변경 등의 사유</p>	<p><u>식으로 장외작업장을 등록하여야 하며, 이때 세관장으로부터 장외작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('23.0. 신설)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의 ----- ----- ----- 한다. ('23.0. 개정)</p> <p>제39조(수출물품의 선(기)적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제1항제11호 신설 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로 적재기간 내에 적재할 수 없어 수출신고 취하하려는 경우에 보세 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재반입 신청(별지 제20호의2서식)을 하고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보세공장에 반입하여야 한다. <u>이 때</u> 운영인은 재반입 신청을 하는 때에 수출신고 취하 신청을 할 수 있다. ('20.7. 신설,' 22.11. 개정)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 <p>제40조(재고조사) ① ~ ⑨ (생략)</p> <p>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, 제17조, 제18조, 제21조, 제22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0조(재고조사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, <u>이때에도</u>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 ('08.12., '22.11. 개정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제42조(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) ① 보세공장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청(신고)하여야 하며, 필요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이 <u>때에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(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2. 영 제190조에 따른 업무내용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신청 (별지 제24호서식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법 제17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(보세공장) 승계신고(별지 제2호의2서식) ('05.1. 신설)</p>	<p>2. -- 제190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용의 ----- -----</p> <p>3. 영 제190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(「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같은 고시 제17조제5항 준용)</p> <p>4. (현행 3.과 같음)</p> <p>5. 법 제179조제2항에 따른 보고, 법 제179조제3항 및 이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(보세공장) 승계신고(별지 제2호의2서식) ('05.1. 신설)</p>	<p>○ 영 제190조제1항 관련 승인사항</p> <p>○ 영 제190조제2항 관련 통보사항</p> <p>○ 제3호 신설(추가)에 따른 조문 이동</p> <p>○ 관련근거 추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5. (생략)</p> <p>제44조(주의 및 경고)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의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,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최근 1년내에 3회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.</p> <p>1. <u>제12조제2항을 위반한 때. 다만,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. ('18.12. 신설, '22.11. 단서 신설)</u></p> <p>2. ~ 7. (생략)</p>	<p>6. (현행 5.와 같음)</p> <p>제44조(주의 및 경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&lt;삭 제&gt; ('23.0.)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할 물품은 운영인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8. 제24조제5항·<u>제6항후단</u> 및 제8항을 위반한 때</p> <p>9. ~ 1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5조(청문) ① 세관장은 법 제164조 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, 이 고시 제36조제4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취소, 법 제178조에 따른 특허 취소·물품반입의 정지·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「<u>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19조를 준용한다. (‘11.3. 개정)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</p>	<p>8. -----<u>제6항 후단</u> -----</p> <p>9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5조(청문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	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<u>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. (‘11.3. 개정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46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3년 1월 1일</u>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6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4년 1월 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재검토기한 재설정</p>

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47조(규제의 재검토) 관세청장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9년 1월 1일</u>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(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7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 「행정규제기본법」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<u>부 칙 &lt;고시 제2023-00호(2023. 0. 0.)&gt;</u></p> <p><u>이 고시는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
<p>[별지 제1호서식]</p> <p>(뒤 쪽)</p> <p>보세공장 설치·운영 특허(갱신) 시 첨부 서류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26 451 833 970"> <tr> <td data-bbox="226 451 309 778">첨부서류</td> <td data-bbox="309 451 833 778"> <p><b>1. 신규의 경우</b>  가. 사업계획서(공장 위치도 및 도면, 물품관리체계 포함)  나.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(또는 승인서) 사본  다. 임차계약서 사본(임차의 경우)  라.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 보고서(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) (※신설공장이 아닌 경우)  마. 「전기사업법」 제63조,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  바. 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의 인적사항</p> <p><b>2. 갱신의 경우</b> 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. 단,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(갱신)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26 778 309 970">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</td> <td data-bbox="309 778 833 970"> <p>1. 법인등기부 등본  2. 국제납세 증명  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 4. 운영인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 5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전검사증명서 (※신설공장의 경우)</p> <p>※ 2부터 5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.</p> </td> </tr> </table>	첨부서류	<p><b>1. 신규의 경우</b>  가. 사업계획서(공장 위치도 및 도면, 물품관리체계 포함)  나.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(또는 승인서) 사본  다. 임차계약서 사본(임차의 경우)  라.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 보고서(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) (※신설공장이 아닌 경우)  마. 「전기사업법」 제63조,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  바. 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의 인적사항</p> <p><b>2. 갱신의 경우</b> 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. 단,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(갱신)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</p>	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<p>1. 법인등기부 등본  2. 국제납세 증명  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 4. 운영인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 5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전검사증명서 (※신설공장의 경우)</p> <p>※ 2부터 5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.</p>	<p>[별지 제1호서식]</p> <p>(뒤 쪽)</p> <p>보세공장 설치·운영 특허(갱신) 시 첨부 서류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98 451 1505 970"> <tr> <td data-bbox="898 451 981 778">첨부서류</td> <td data-bbox="981 451 1505 778"> <p><b>1. 신규의 경우</b>  가. 사업계획서(공장 위치도 및 도면, 물품관리체계 포함)  나.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(또는 승인서) 사본  다. 임차계약서 사본(임차의 경우)  라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(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) (※신설공장이 아닌 경우)  마. 「전기사업법」 제63조,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  바. 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의 인적사항</p> <p><b>2. 갱신의 경우</b> 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. 단,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(갱신)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98 778 981 970">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</td> <td data-bbox="981 778 1505 970"> <p>1. 법인등기부 등본  2. 국제납세 증명  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 4. 운영인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 5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전검사증명서 (※신설공장의 경우)</p> <p>※ 2부터 5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.</p> </td> </tr> </table>	첨부서류	<p><b>1. 신규의 경우</b>  가. 사업계획서(공장 위치도 및 도면, 물품관리체계 포함)  나.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(또는 승인서) 사본  다. 임차계약서 사본(임차의 경우)  라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(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) (※신설공장이 아닌 경우)  마. 「전기사업법」 제63조,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  바. 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의 인적사항</p> <p><b>2. 갱신의 경우</b> 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. 단,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(갱신)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</p>	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<p>1. 법인등기부 등본  2. 국제납세 증명  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 4. 운영인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 5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전검사증명서 (※신설공장의 경우)</p> <p>※ 2부터 5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.</p>	<p>○ 법령명 변경 반영</p>
첨부서류	<p><b>1. 신규의 경우</b>  가. 사업계획서(공장 위치도 및 도면, 물품관리체계 포함)  나.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(또는 승인서) 사본  다. 임차계약서 사본(임차의 경우)  라.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 보고서(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) (※신설공장이 아닌 경우)  마. 「전기사업법」 제63조,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  바. 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의 인적사항</p> <p><b>2. 갱신의 경우</b> 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. 단,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(갱신)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</p>									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<p>1. 법인등기부 등본  2. 국제납세 증명  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 4. 운영인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 5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전검사증명서 (※신설공장의 경우)</p> <p>※ 2부터 5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.</p>									
첨부서류	<p><b>1. 신규의 경우</b>  가. 사업계획서(공장 위치도 및 도면, 물품관리체계 포함)  나.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(또는 승인서) 사본  다. 임차계약서 사본(임차의 경우)  라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(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) (※신설공장이 아닌 경우)  마. 「전기사업법」 제63조,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  바. 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의 인적사항</p> <p><b>2. 갱신의 경우</b> 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. 단,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(갱신)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</p>									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<p>1. 법인등기부 등본  2. 국제납세 증명  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 4. 운영인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 5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전검사증명서 (※신설공장의 경우)</p> <p>※ 2부터 5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.</p>									